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11599 저작권등록말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이화용, 조은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합7632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이유 5행의 "분할되어" 부분에 각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기존에 D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양말 사업부문은 존속회사인 D 주식회사가, 문구 사업부문은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E(등기부상 성립연월일 2002. 5. 7.)가 영위하게 되었다.』

○ 3면 2행의 "K" 뒤에 ", 이하 '이 사건 E상표'라 한다"를 추가하고, "이하부터는" 뒤에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수정하는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1)]

『3)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으므로,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원본(을 제44호증)에 저작자로서 실명을 표시하였으므로, 위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1)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0, 11, 18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문자와 결합되어 등록된 이 사건 E상표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국내에서 I일자 출원되어 J일자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E상표는 2003년경 원고의 CI 변경으로 문구업계 잡지에 소개되었고[2], 이 사건 E상표 중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일부[이 사건 E상표에서 'AD' 부분이 생략된 부분,  {이하 '이 사건 E상표(부분)'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형광펜, 크레용,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등의 문구류 제품 및 그 포장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품의 광고도 문구업계 잡지에 게재되었다.[3]

나)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은 2004년경부터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등의 문구류 제품 및 그 포장에 사용되어 왔고, 이러한 제품의 광고도 문구업계 잡지에 게재되었다.[4]

다)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사용된 위와 같은 문구류 제품 및 그 포장이나 광고에 저작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위 문구류 제품 및 그 포장에는 모두 이 사건 E상표(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사용된 위와 같은 문구류 제품 및 포장에 모두 이 사건 E상표(부분)을 표시하였는데, 이 사건 E상표(부분)은 원고의 상호 표시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발행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저작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원고의 업무상저작물[5]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갑 제10, 11호증
3) 갑 제10, 11, 18호증, 을 제53호증
4) 갑 제18호증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2003~2004년경부터 원고가 제조·판매한 문구류 제품에 사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 창작 시점도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는 구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1)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4호증, 을 제48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그림(을 제44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이 연필로 그려져 있고 그 우측 하단에 "2001 B"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2001년 달력(을 제48호증의 2) 중 5월 부분 하단에도 이 사건 제1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이 연필로 그려져 있는 점[6], ② 피고는 위 시기를 창작 시점으로 특정한 경위를 딸의 첫돌 무렵이었던 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의 딸은 실제로 2000. 5.생이고, 위 2001년 5월 달력에도 딸의 돌잔치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을 피고가 창작하였고, 그 창작 시점도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1. 5.경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7]

나)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제3의 나. 1) 가)항에서 본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 을 제17, 18, 23호증, 을 제48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은 원고의 기획 하에 피고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원고 명의로 공표된 구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8]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용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기재하였다.

6)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을 제44호증과 을 제48호증의 2의 각 원본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근래에 작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7) 다만,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을 제45호증,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적으로 의뢰하여 진행된 감정 결과이다)의 경우, 을 제44호증의 작성 시점을 근래가 아닌 기재년도(2001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문서들의 작성연도, 보관환경과 보관방법 등이 모두 달라 그 지질이 변색되거나 마모된 정도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을 제44호증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비교대상문서들의 작성연도 역시 1994년부터 2004년까지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서상 감정결과를 도출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다.

(1)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은 새 머리 형상의 도안으로 원고의 상호이자 제품명인 'E'의 영문 표기 'AE'와 결합하여 이 사건 E상표 또는 이 사건 E상표(부분)로 사용되어 왔다.

(2) 원고[9]는 2003. 4. 21.경 '로고 확정에 따른 국내외 상표 출원'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품의를 거쳐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이 사건 E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위 품의서(갑 제5호증)에는 기안부서가 경리부로, 협의부서가 홍보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품의서에 협의부서로 홍보실이 기재된 이유는 그 전단계인 로고 확정의 주무부서가 홍보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10],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은 원고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 하에 원고 내부의 공식적인 확정 절차를 거쳐 원고의 상표 도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00. 2.경 원고[11]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2. 5.경부터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재직하였고[12], 위 품의서 결재 당시에도 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3. 3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13]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도 재직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위 그림(을 제44호증)에도 이 사건 제1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과 함께 영문 AF가 'AF', 'AG',

8)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요건에 차이가 없다.
9) 여기서는 주식회사 E(앞서 본 바와 같이 문구 사업부문이 분할된 신설회사)를 뜻한다.
10) 피고의 항소이유서 11면
11)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분할 전 D 주식회사이다.
12) 갑 제3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4. 30.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E가 다시 원고에 흡수합병될 때까지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3) 주식회사 E의 분할 당시 존속회사 D 주식회사 및 그 후 다시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한 현재의 원고를 뜻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AE'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01년 5월 달력(을 제48호증의 2)에도 이 사건 제1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과 함께 영문 AF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형상을 원고의 브랜드 구축과 관련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상호에 'E'가 직접 사용된 것은 2002. 5. 7. 주식회사 E가 설립된 때부터이기는 하나, 원고는 1999. 4.경 이미 'AH'를 출시한 상태였다[14]).

(5) 피고는 자신이 2001년경에는 원고의 양말 사업부분에서 근무하였고 2002. 4.경부터 비로소 문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위 그림은 원고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① 피고는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AI의 아들로서 단순히 소속 부서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피용자와 그 업무와 역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01년경은 주식회사 E가 분할되기 전으로서 원고 내부에 양말과 문구 사업부문이 모두 존재하였던 점[15], ③ 피고가 제출한 2002년 달력에는 'AJ', 'AK'가 기재되어 있는데[16], 위 시기 역시 피고가 정식으로 문구 사업부문에서 근무한 기간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을 원고의 문구사업과 무관하게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저작물의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7)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F, G과 피고는 2017. 5.경부터 원고를 H에 대한 지

14) 갑 제7호증
15) 원고의 연혁(갑 제1호증)에는 원고의 설립 이후 주요 사업 경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1978년 '문구류 제조판매 신규 사업제품 개발 개시' 이후에는 양말 사업부문보다는 문구 사업부문 관련 사업 경과가 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16) 위 기재만으로 피고가 출장까지 갔었던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주회사와 나머지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에 관하여

가) 원고가 2016년에 이르러 이 사건 제2항 저작물과 유사한 형상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창작자로 피고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위 각 디자인 등록 당시에는 원고의 중국 자회사인 H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창작자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항 저작물도 피고가 실제로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제3의 나. 1) 나), 다)항 및 위 제3의 다. 1) 나) (3), (5), (6)항에서 본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도 원고의 기획 하에 피고 또는 그 밖의 원고 직원이 업무종사자로서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원고 명의로 공표된 구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은 모두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등 문구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쇄되어 사용되는 도안이다.

(2) 원고는 2016. 1.과 2023. 9.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였고, 2016년에 국내에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도 이 사건 각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의 형상에 관한 권리 확보는 원고의 명의와 비용으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고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위 회사 분할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에 관하여도 그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2023. 4.경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일응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저작권등록을 마치기 훨씬 오래 전인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발행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로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의 발행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로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바, 피고의 위 각 저작권등록에 의한 저작자 추정의 효력이 원고에 대한 위 저작권자 추정의 효력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저작권등록 당시 창작연월일을 '2001. 6. 1.'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위 창작연월일에는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원고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피고의 위 각 저작권등록에 의한 저작자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원본으로 주장하는 그림(을 제44호증)의 우측 하단에 영문으로 피고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은 원고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위 실명 기재에 의한 저작자 추정 역시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현

판사 강성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1

판사 송혜정